

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## 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 215 호

제안일자 : 2016. 3. 21.

제 안 자 : 행정재경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조문의 정의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어순을 수정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 제목을 “정의” 로 “정의” 를 “뜻” 으로 수정함(안 제2조)

나. “강남구청” 으로 수정함.(안 제2조)

다. “통할” 을 “총괄” 로 수정 함(안 제9조)

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## 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제2조 조 제목을 “용어의 정의” 를 “정의” 로 “정의” 는 “뜻” 으로 한다.

안 제2조제1호의 “강남구청” 을 “강남구청” 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4항내용 중 “통할” 을 “총괄” 로 한다.



라. 과학·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

2. "외빈"이란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, 행정수반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각료, 주한외교사절, 지방자치단체의장,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.

3. 4. (생략)

제3조(수여대상)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(이하 "명예구민증"이라 한다)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다른 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.

2. (생략)

라. -----  
-----  
-----  
기여한 사람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지방자치단체의장, -----  
-----  
----- 사람을 -----.
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수여대상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사람으로 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 사람

2. (현행과 같음)

2. ~ 4 (개정안과 같음)

제3조(수여대상) (개정안과 같음)

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
3. 서울특별시 강남구  
청장(이하 "구청장"  
이라 한다)이 강남구  
를 방문하는 외빈 또  
는 현지 외국인 또는  
해외 입양인 중 구정  
발전을 위하여 특히  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경우

제5조(수여대상자 결정)  
명예구민증 수여대상  
은 제4조에 따라 추천  
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 
강남구 명예구민증 수  
여심사위원회의 심사  
를 거쳐 결정한다. 다  
만, 제3조제3호의 경우  
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(명예구민증 수여  
및 부상) ① 제5조에  
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 
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 
게 명예구민증과 명예  
구민증명서를 수여한  
다.

② 제1항에 따라 명예  
구민증을 수여받은 자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외빈이나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5조(수여대상자 결정)  
-----  
----- 추천된  
사람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6조(명예구민증 수여  
및 부상) ① -----  
-----  
----- 사람에게  
게 -----  
-----  
-----  
② -----  
----- 사

제5조(수여대상자 결정)  
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(명예구민증 수여  
및 부상) ①~③ (개정  
안과 같음)



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

2.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9.12.18>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사람  
에 -----  
-----

2. ----- 수  
여받은 사람에 ----  
----- 취소 여부 -  
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개정안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<개정 2009.12.18>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그 밖에 구정과 국제 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명

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강남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없을 때 -----  
-----.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 
-----  
----- 있는 사람 -----  
-----

⑦ -----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-  
-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-----

④ -----  
-----  
----- 총괄 -----.

⑤ ~ ⑥ (개정안과 같음)

- 1.~4.(개정안과 같음)

⑦ (개정안과 같음)



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 
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 
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
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회의)

① (생략)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  
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
하고, 출석위원 3분의  
2 이상의 찬성으로 의  
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  
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 
결정한다.

③ (생략)
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0조(위원회의 회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부결된 것으  
로 본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의 회의)

① ~ ③ (개정안과 같  
음)